

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 심사보고서

2005. 10. 2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10월 19일 마포구청장 제출
 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10월 19일
 - 다. 상정일자 : 제116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(2005. 10. 27)
-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도 봉 주

가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,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상수동

- “2005년도 중기재정계획”에 의거 일반행정부분 투자사업이며, 서강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유토지(상수동 281-3,6,7)와 동 조합 사업부지내 구유지(도로 등)와 상호교환(2개 감정평가 기관의 산술 평균한 감정평가액)하여 지하1층~지상3층 약360평 규모로 동 청사를 건축 할 계획이었으나, 조합 측의 사정에 의거 부지확보 지연으로 동 청사 건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, 금년 내 부지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됨.

- 상수동 관내 사설 어린이 보육시설 4개 외 구립 등 기타 어린이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, 상수동 빗물펌프장의 관사가 노후하고 동 청사 건립 부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짐을 감안하여 어린이 보육시설 및 상수동 빗물펌프장 관사를 동 청사에 포함하여 지하1층~지상4층, 연면적 약487평 규모로의 건립계획 변경 및 2006년도의 사업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함.

- 동 청사 건립재원 확보방안으로 총 소요예산 3,389백만원 중 2005년도 본 예산액(2,287백만원)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조치하고, 부족 예산액(1,102백만원)을 2006년도 본 예산에 편성 집행하고자 함.

구분	재 산 표 시			추정 가액 (단위:천원)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소유자 (주 소, 성 명)	비 고
	지목	소재지	면적(m ²)					
계			1,607.10	3,389,000				
변경전	건물	마포구 상수동 281-3 외2필지	1,190.00	2,160,000	2006년도	동 청사 건 립	마포구 성산동 275-3	지하1층 지상3층
변경후	건물	마포구 상수동 281-3 외2필지	1,607.10	3,389,000	2007년도	동 청사 건 립	마포구 성산동 275-3	지하1층 지상4층

○ 상암동

- “2005년도 중기재정계획”에 의거 일반행정부문 투자사업 내역으로 2004년도에 동 청사 부지(상암동 7-1, 8-4)를 확보하여 상암동 동 청사를 지하1층~지상3층 약360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였으나, 주민요구 및 상암동 동정 여건을 고려하여,

- 확보된 부지(상암동 7-1, 8-4) 883.0㎡(267.1평)에 지하 1층~지상4층 연면적 1,471.8㎡(약446평)규모의 동 청사 건립계획 변경 및 2006년도 사업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함.

- 동 청사 건립재원 확보방안으로 총 소요예산 3,132백만원 중 2005년도 예산액 2,160백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, 부족 예산액 844,725천원을 2006년도 본 예산에 집행하고자 함.

구분	재 산 표 시			추정 가액 (단위:천원)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소유자 (주 소, 성 명)	비 고
	지목	소재지	면적(㎡)					
계			1,471.8	3,131,585				
변경전	건물	마포구 상암동 7-1, 8-4	1,190.00	2,160,000	2004년도	동 청사 건 립	마포구 성산동 275-3	지하1층 지상3층
변경후	건물	마포구 상암동 7-1, 8-4	1,471.8	3,131,585	2006년도	동 청사 건 립	마포구 성산동 275-3	지하1층 지상4층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건물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상수동 및 상암동 동청사의 규모를 일부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임.

<주요내용>

가. 상수동

○ 상수동 동 청사는 지하1층~지상3층 연면적 1,190㎡(약 360평) 규모로 2003년도에 건축할 예정이었으나, 부지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동청사 건립이 지연되었고 2005년도에는 부지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어, 당초 관리계획에 의한 동 청사외에 어린이 보육시설 및 상수동 빗물펌프장 관사를 동 청사에 추가 포함하여 지하1층~지상4층 연면적 1,607.1㎡(약 487평) 규모로 건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○ 동 청사의 건립재원 확보방안은 총 소요예산 33억8,900만원 중 2005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된 22억8,700만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도록 조치하고 부족액인 11억200만원은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함.

나. 상암동

○ 상암동 동 청사는 2004년도에 신축부지(상암동 7-1, 8-4) 883㎡를 확보하여 지하1층~지상3층 연면적 1,190㎡(약 360평)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었으나, 상암동 주변여건과 주민요구를 고려하여 지하1층~지상4층 연면적 1,471.8㎡(약 446평) 규모로 건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○ 동 청사의 건립재원 확보방안은 총 소요예산 31억3,200만원 중 2005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된 21억6,000만원은 사고이월 하도록 조치하고 부족액인 8억4,472만5천원은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함.

〈검토의견〉

○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91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그 동안 부지확보와 주변여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2006년도에는 동 청사의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종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계획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을 명시 및 사고이월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추후 관련부서에서는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박지위 위원) : 상수동, 상암동 청사가 1개층씩 증축된 이유는?
- 답변요지(김종선 주민자치과장) : 상수동은 주변에 어린이 집이 없어 1층에 구립어린이 집을 설립할 예정이고, 상암동은 관할구역 면적이 넓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증축하게 되었음.
- 질의요지(정형기 위원) : 동청사 건립시 설계 변경을 하는 이유는?
- 답변요지(김종선 주민자치과장) : 앞으로는 각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(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: 2005. 10.
제 출 자: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,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가. 상수동

- "2005년도 중기재정계획"에 의거 일반행정부문 투자사업이며, 서강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유토지(상수동 281-3,6,7)와 동 조합 사업부지내 구유지(도로 등)와 상호교환(2개 감정평가 기관의 산술평균한 감정평가액)하여 지하1층~지상3층 약360평 규모로 동 청사를 건축 할 계획이었으나, 조합 측의 사정에 의거 부지확보 지연으로 동 청사 건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, 금년 내 부지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됨.
- 상수동 관내 사설 어린이 보육시설 4개 외 구립 등 기타 어린이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, 상수동 빗물펌프장의 관사가 노후하고 동 청사 건립 부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짐을 감안하여 어린이 보육시설 및 상수동 빗물펌프장 관사를 동 청사에 포함하여 지하1층~지상4층, 연면적 약487평 규모로의 건립계획 변경 및 2006년도의 사업계획으로 변경 하고자 함.
- 동 청사 건립재원 확보방안으로 총 소요예산 3,389백만원 중 2005년도 본 예산액(2,287백만원)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조치하고, 부족 예산액(1,102백만원)을 2006년도 본 예산에 편성 집행하고자 함

구분	재 산 표 시		추정 가액 (단위:천원)	취 득 시 기	취 득 사유	취득재산 소유자 (주소, 성 명)	비고
	지목	소 재 지 면적(m ²)					
계		1,607.10	3,389,000				
변경전	건물	마포구 상수동 281-3 외2필지	1,190.00	2,160,000	2006년도	동 청사 건립 ○마포구 성산동 275-3	지하1층 지상3층
변경후	건물	마포구 상수동 281-3 외2필지	1,607.10	3,389,000	2007년도	동 청사 건립 ○마포구 성산동 275-3	지하1층 지상4층

나. 상암동

- "2005년도 중기재정계획"에 의거 일반행정부문 투자사업내역으로 2004년도에 동 청사 부지(상암동 7-1, 8-4)를 확보하여 상암동 동 청사를 지하1층~지상3층 약360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였으나, 주민요구 및 상암동 동정 여건을 고려하여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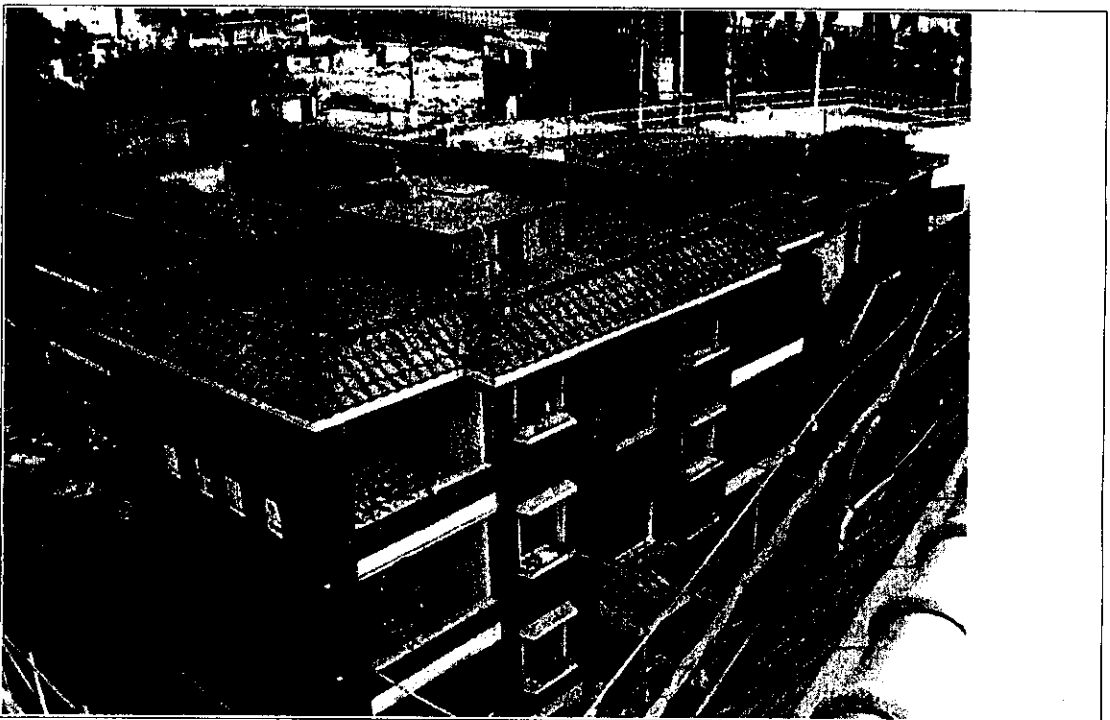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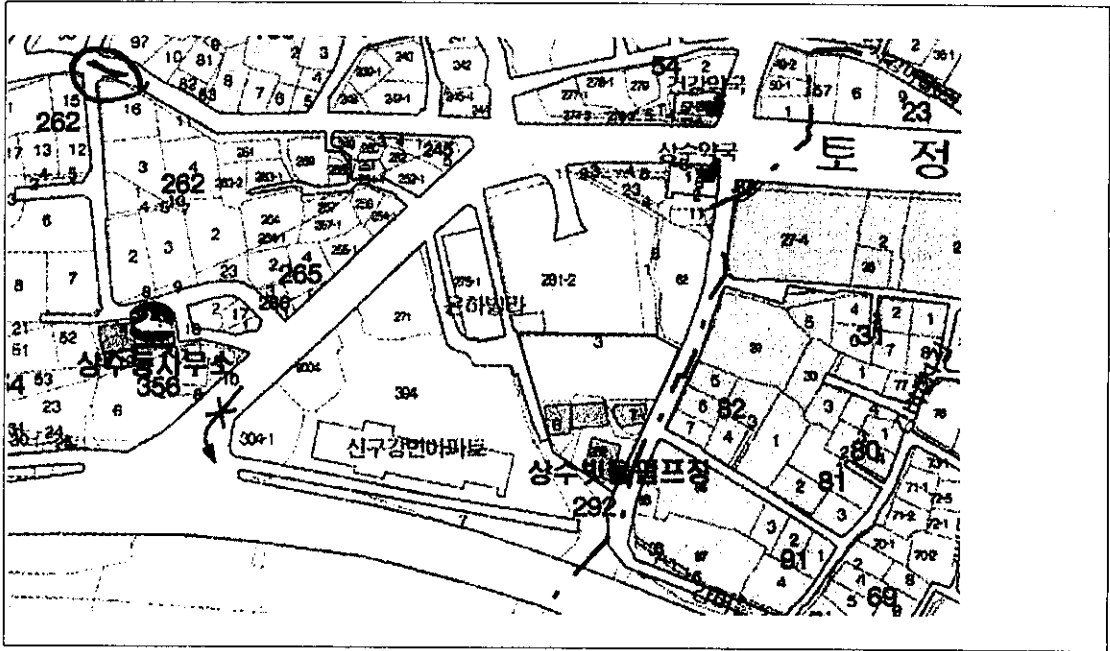
- 확보된 부지(상암동 7-1, 8-4) 883.0㎡(267.1평)에 지하1층~지상4층 연면적 1,471.8㎡(약446평) 규모의 동 청사 건립계획 변경 및 2006년도 사업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함
- 동 청사 건립재원 확보방안으로 총 소요예산 3,132백만원 중 2005년도 예산액 2,160백만원을 사고 이월 조치하고, 부족 예산액 844,725천원을 2006년도 본 예산에 집행하고자 함

구분	재 산 표 시		추정 가액 (단위:천원)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소유자 (주 소, 성 명)	비고
	지 목	소 재 지 연면적(㎡)					
계		1,471.8	3,131,585				
변경전	건물	마포구 상암동 7-1, 8-4	1,190.0	2,160,000	2004년도	동 청사 건 립 ○ 마포구 성산동 275-3	지하1층 지상3층
변경후	건물	마포구 상암동 7-1, 8-4	1,471.8	3,131,585	2006년도	동 청사 건 립 ○ 마포구 성산동 275-3	지하1층 지상4층

3. 근 거

- 지방재정법(개정:2001.1.29, 법률 : 제6400호) 제77조제1항
- 지방자치법(개정:2002.3.25, 법률 : 제6669호) 제35조제1항제6호
- 지방재정법시행령(개정:2002.12.31, 대통령령 : 제17871호) 제84조제2항
-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(개정:2002.10.5, 조례 : 제521호) 제36조, 제37조
-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(개정:2001.3.31, 규칙 : 제354호) 제29조

위치 및 현황사진



위치 및 현황사진

